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50
----------	------

발의연월일 : 2017. 11. 9.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 이현찬, 김경자(양천),  
김인제, 문상모, 유찬중,  
유 용, 유동균, 김제리,  
김진철, 박기열, 김혜련,  
이윤희, 장인홍, 박호근,  
이정훈, 조상호, 김동율,  
오경환, 김태수, 한명희,  
전철수, 장우윤 의원(22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함(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 정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서울특별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5. 50억 이상의 사업이나 3천 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이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진행 중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완료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이하 “사업관리이력서”라 한다) 등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sum_{i=1}^5$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운영비) $_i$  = 22,000천원

- 연간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비 : 4,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 × 9명 × 년 4회 = 3,600천원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은 참석수당 지급 인원에서 제외
- 업무추진경비 : 20,000원 × 10명 × 년 4회 = 800천원
-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는 1인당 2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

○  $\sum_{i=1}^5$ (정책실명제대상사업평가비용) $_i$  = 42,900천원

- 연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비용 : 8,580천원

· 운영비		6,080	천원
- (본청) 검토수당	40,000원 × 10명 × 2회 =	800	천원
- (교육지원청) 검토수당	40,000원 × 6명 × 2회 × 11청 =	5,280	천원
· 업무추진비		2,500	천원
- (본청) 평가협의회	20,000원 × 15명 × 1회 =	31,200	천원
- (교육지원청) 평가협의회	20,000원 × 10명 × 1회 × 11청 =	52,800	천원

※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학교안전계획·실적 평가단 운영’ 예산비를 준용하여 작성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